



대한체육회



수 신 대한요트협회장

(경유)

제 목 대한요트협회 임원(회장) 인준 통보

1. 관련근거: 대한요트협회-1209(2018.5.18.) 「대한요트협회장 인준 요청」
종목육성부-3312(2018.6.12.) 「대한요트협회장 인준불가 통보 알림」
대한요트협회-2235(2018.9.18.) 「대한요트협회장 인준 요청(유준상 당선자)」
종목육성부-7850(2018.12.21.) 「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 대응」
종목육성부-3523(2019.5.14.) 「회장 지위 확인 청구 상고 소송 대응」
2019다234143 「회장 지위 확인 청구 상고 소송 판결(대법원)」
2. 대한요트협회 회장 인준요청 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(사건번호:2019다234143, 판결일자:2019.8.29/ 심리불속행기각 종결)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 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인준합니다.

인준사항

- 성명: 유준상(1942.10.10.)
- 직위: 회장
- 임원임기: 당선일부터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
 - 관련근거: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 7항 및 부칙(2019.5.29.)제2조

행정사항

- 임원인준 요청사항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
-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체육정보시스템 체육인 인명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
- 향후, 우리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사유나 기타 사항 등으로 인해 인준에 하자가 있을 경우, 우리회 직권으로 임원 인준을

취소할 수 있음. 끝.

대한체육회장



★과장	이보람 부장	이옥규 본부장	이현진 사무부총장	박철근
사무총장	전결 09/03 김승호			
협조자				

시행 종목육성부-5783 (2019.09.03.) 접수 (사)대한요트협회-1989 (2019.09.03.)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(방이동, 대한체육회) / <http://www.sports.or.kr>
전화 02-2144-8038 /전송 / / 공개